
2017년도 의회사무국



자체행정감사 결과공개



남 구
[감사실]

의회사무국 자체행정감사 결과보고

I 감사 개요

1. 감사근거 및 관련규정
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(자체감사의 종류)
- 인천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 제 4조(감사대상기관)
- 2017년도 감사계획(감사실-8975/2016.12.29)

2. 감사실시 개요

- 감사대상 : 남구 의회사무국
- 감사기간 : 2017. 4. 25 ~ 4. 28.(4일간)
- 감사범위 : 2014. 4월 ~ 2017. 3월
- 감사종류 : 종합감사
- 감사방법 : 실지감사
- 대상사무 : 기관운영 사무전반(회의운영, 의원 등 고유사무 제외)
- 감사반원 : 감사팀장 외 2명
- 중점감사 사항
 - 선심성·낭비성 예산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 사례
 - 업무추진비,시설비,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
 - 세미나 및 비교시찰 관련 여비 등 예산집행 실태
 - 각종 계약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
 - 종전감사 지적사항 반복적 발생 여부 등

II 감사결과

1. 총괄

가. 분야별 처분내역

구 분	처 분 현 황 (건)	행 정 상 조 치			재 정 상 조 치			신 분 상 조 치	비 고
		계	시 정	주 의	계	추 장· 회 수 (세입)	환 금· 감 액		
계	6	6	3	3				기관 경고	

나. 세부 처분내역

연 번	분야별	제 목	처분내역			비 고
			행정상	재정상 (천원)	신분상	
1	회계분야	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품의 지연	시정		기관 경고	
2		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	시정			
3		회계관직 대리업무 부적정	시정			
4		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	주의			
5		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	주의			
6	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주의			

2. 주요 지적사항

【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품의 지연】

○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·조례·규칙·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, 신용카드 사용 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,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.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다. ③ 지출을 결정한다. ④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지급(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) 절차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각종 세출예산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하면서 집행품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품의절차를 완료하고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, 업무추진비 등 선 지출 후 1일에서 20일까지 지연하여 품의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계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.



신용카드 사용 시 사전 집행 품의 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 엄중 시정 촉구 하오니,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

《행정상 시정, 신분상 기관경고》

【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】

○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,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령 「별표 6」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.

○ 이에 따른 남구 의회사무국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근거는 “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” 「별표2」에 규정하고는 있으나,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한 세부적으로 기준 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한 상한액 기준을 그대로 인용 규정하고 있으며, 2014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회 65명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실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(의장, 부의장 ->3급, 의원->4급)하여 국외여비를 산정하였다.



지방의회의원 공무여행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행정상 시정》

【 회계관직 대리업무 부적정】

○ 회계관계공무원은 「회계관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 2호가목부터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·재무관·지출원·출납원·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

○ 「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」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1항 2호에 따르면 구 의회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있어 재무관은 의회사무국장, 지출원은 의회사무국 서무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며,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,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○ 「인천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제 4조(법정대리) 제 1항에 따르면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, 출장, 기타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.

○ 남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재무관의 연가 등을 실시하면서 전문위원으로 대리하도록 하는 등 총 241건에 대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변경하여 운영하였다.



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향후 재무관이 휴가,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렬별 차하급자가(사실상 직제순) 대리하도록 하시기 바람.

《행정상 시정》

【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】

○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제 I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대형할인점,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,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,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(실·과장)까지 보고(결재)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신용카드 발급절차의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한다. 또한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○ 또한 신용카드 보관·관리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·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(收受)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○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대형할인점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포인트 2,943점을 개인용으로 적립하였고, 2017.2.27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발급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.



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사례로 엄중 주의 촉구 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《행정상 주의》

【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】

- 지방재정법 제 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에서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시설비는 건물,기계,기구,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(도로,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,재료비,유류대,소규모 토지 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)으로 되어있다.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,연료비,시설 장비 유지비,차량·선박비,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
-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,시설,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(물품)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고,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.
-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2014.10.21 세미나실에 방송장비를 설치하면서 시설비로 집행해야할 사업을 공공운영비(방송 및 영상시설 유지비)로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면서 작업공정 전·후 사진 누락, 준공조서 미 작성 등 예산을 부주의하게 집행하였다.



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로 엄중 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《행정상 주의》

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】

○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·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

○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제 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에서 지방의회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○ [별표 2]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 7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‘나목’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·취임·또는 전·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·화분·기념품 및 식사제공을 할수 있으나, 퇴임·취임 또는 전·출입하는 경우의 범위는

-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다른 지방의회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하는 경우로

○ 의회사무국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 전출입 및 학산문화원장 재임식 축하 화분 구입 등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상기관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.



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직무활동의 범위에 맞게 집행하시고, 향후 동일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행정상 주의》